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 기반의 입법안 조사

미국 낙태법 조사 및 적용 II



● David Lee Mundy 지도교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과거 및 현재의 낙태법 및 낙태 제한법들을 조사하여,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낙태 최소화를 위한 법제로는, 낙태 가능 태아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낙태 보고 의무(notice requirement)는 낙태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지도교수: David Lee Mundy

연구원: 김근우, 김동민, 김세라,
김원석, 박영광, 박지현, 신예은

편집자: 김서현, 박영광, 임수향

목차

1. 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2. 산모 및 태아에 관한 조항

2-1. 태아 심박법

2-2. 수술 전 72시간 대기 조건

2-3. 수술 전 초음파 및 태아 심장박동 검사 시술

3. 의료인 및 관련기관에 관한 조항

3-1. 전문 의료인 요구 조건

3-2.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및 비차별

3-3. 임신 지원 센터 관련 조건

4. 낙태 통지 및 보고에 관한 조항

4-1. 낙태 보고 의무

4-2.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4-3.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배우자 동의서 고지 의무화

5. 정부 및 사회에 관한 조항

5-1. 낙태시 정부 자금 지원 금지

5-2.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정부의 사전 허가제 의무화

5-3. 낙태에 관한 민사소송

두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4~5번까지의 내용이 실립니다.

4-1 낙태 보고 의무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신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 정부 기관들은 낙태 수술 제공자들에게 보고 양식을 제공한다. 2000년도에 약물 낙태를 허용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정보 역시 보고 의무에 추가되었다. 전형적으로 보고 의무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 낙태 수술 시설과 수술자에 대한 정보
- 임신부의 정보 (예: 나이, 인종, 민족, 결혼 여부 이전 결혼 횟수 등)
- 임신 나이
- 낙태 수술법

미국의 50개주의 낙태 보고 의무 현황

- 46개 주는 병원, 낙태 시설 및 낙태 시행자가 주 정부에 정기적인 기밀 형태의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8개 주는 낙태 시행자가 낙태 비용 지불 방법을 지정한다.
- 27개 주는 낙태 시행자가 낙태 후 합병증 여부를 보고하도록 한다.

■ 16개 주는 낙태 시행자로 하여금 임신부가 낙태하는 이유를 표기하도록 한다.

· 10개 주는 낙태의 이유가 임신부의 건강 유지 또는 생명의 위협 때문인지 표기하도록 한다.

· 7개 주는 낙태의 이유가 강간 또는 근친인지 표기하도록 한다.

· 15개 주는 낙태의 이유가 태아의 기형 진단인지 표기하도록 한다.

· 9개 주는 이외의 이유로 낙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적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임신부의 경제적 상황 또는 가족의 현황)

■ 6개 주는 낙태 시행자로 하여금 태아가 생존가능한지 보고하도록 한다.

■ 14개 주는 낙태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주가 낙태 상담이나 부모의 동의 등이 충족되었는지 표기하도록 한다.

· 9개 주는 낙태 시행자로 하여금 주 정부가 의무화한 상담이 제공되었는지 보고하도록 한다.

· 14개 주는 낙태 시행자로 하여금 부모의 동의가 충족되었는지 보고하도록 한다.

아래는 오클라호마 주의 통계적 낙태보고법 중 일부이다. 해당 법률은 낙태 시행자로 하여금 낙태와 관련된 정보를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보고 양식을 제시한다.



1-738k. 개인낙태보고양식-통지-양식¹

- A. 주 보건부는 보안 웹사이트에 개인낙태 보고양식과 이를 전산상 제출하는 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개인낙태 보고양식에 성명, 주소, 출생지, 거주지, 또는 여하한 환자의 신상을 밝히는 여하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보건부의 개인낙태보고양식은 하위 조항 F에서 제시하는 서식과 구체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으나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양식을 가져야 한다.
- B. 여하한 낙태 시술 의사는 전산상으로 개인낙태 보고양식을 낙태를 시술한 달 다음 달의 마지막 영업일 이전까지 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낙태 시술 한 건당 양식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 C. ...
- D. ...
- E. 보건부의 개인낙태 보고양식은 다음의 서식과 구체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으나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양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낙태보고양식

(시행한 낙태 수술 한 건당 양식 한 부를 제출)

1-738k. 개인낙태보고양식 - 통지 - 양식

... B. 주 보건복지부는 보안 웹사이트에 개인낙태보고양식과 이를 전산상 제출하는 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개인낙태보고양식에 성명, 주소, 출생지, 거주지, 또는 여하한 환자의 신상을 밝히는 여하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개인낙태보고양식은 하위 조항 F에서 제시하는 서식과 구체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양식을 가져야 한다.

C. 여하한 낙태 시술 의사는 전산상으로 개인낙태보고양식을 주 보건복지부에 낙태를 시술한 달 다음 달의 마지막 영업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낙태 시술 한 건당 양식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

F. 보건복지부의 개인낙태보고양식은 다음의 서식과 구체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양식을 가져야 한다.

- | | |
|-------------------------------------|---------------------------------|
| 1. 낙태 시술일: | 요소용액법(Urea): |
| 2. 낙태 시술 지역: | 프로스타그란딘(Prostaglandins): |
| 3. 임부의 나이: | 부분출산낙태(Partial Birth Abortion): |
| 4. 결혼 상태: (혼인, 이혼, 별거, 사별, 미혼 중 선택) | 제왕 절개(Hysterotomy): |
| 5. 임부의 인종: | 기타 (명기할 것): |
| 6. 임부의 학력: | 11. 낙태 시술 후 생존한 아기가 있는가? 있다면: |
| 7. 임부의 거주지: | 생명 유지 조치가 시행되었는가? : |
| 8. 임부의 이전 임신 여부: | 해당 아기가 산 시간 또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 |
| 출생: | 12. 임부에게 마취제가 투입되었는가? |
| 유산: |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마취제인가? |
| 낙태: | 13. 태아에게 마취제가 투입되었는가? |
| 9. 대략적인 임신나이:(임부의 마지막 월경으로 계산) |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마취제인가? |
| 10. 낙태 방법: | 어떻게 투입되었는가? |
| 흡인(Suction Aspiration): | 14. 태아 조직의 처리 방법: |
| 자궁소파술(Dilation and Curettage) : | 15. 법률에 정해진 바 “의료적 응급상황”이 아닌 |
| 경구피임약(RU 486): | 경우, 낙태 시술 의사 또는 대리인은 임신부로부터 |
|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 |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낙태의 사유를 조사해야 |
| 기타 약물 (명기할 것): | 한다. 해당 의료적 응급상황이 존재한 경우, 낙태 |
| 경관확장자궁소파술(Dilation and Evacuation): | 시술 의사 또는 대리인은 즉각 낙태를 실시할 필 |
| 염성용액법(Saline): | 요가 있는 해당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해 |
| | 야 한다: |
| | ■ 낙태 사유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기할 것) |

출산을 하는 것은

임부의 삶에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

임부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임부의 직업/취업/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임부에게 다른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다:

임부에게 자녀를 양육할 금전적 능력이 없다:

임부가 미혼이다:

임부가 학생이거나 학생이 되기를 계획 중이다:

임부가 자녀 양육의 능력이 없다:

임부가 직업이 없다:

임부가 직장을 떠나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다:

임부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임부가 남편이나 애인에게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생부나 남편이나 애인이 직업이 없다:

임부가 현재 또는 일시적으로 생활 보호 대상자이다:

임부가 미혼모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임부가 생부와와의 관계 문제가 있다:

임부가 생부를 특정할 수 없다:

애인과 임부가 결혼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

임부가 더 이상 생부와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

생부와와의 관계나 결혼 관계를 곧 지속하지 않는다:

남편 또는 애인이 임부나 그녀의 자녀에게 폭력적이다:

임부는 그녀의 자녀 양육을 마무리하였다:

임부는 아직 또 다른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임부가 자신이 성관계를 가졌거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임부가 자녀 양육을 위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남편 또는 애인이 임부가 낙태를 하기를 원한다: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있다:

임부의 신체상 건강에 위험성이 있다:

임부의 부모가 임부가 낙태를 하기를 원한다:

임부의 정신적 상태에 위험성이 있다:

법률에 정해진 “의료상 응급상황”이다:

임부가 다른 성의 아이를 원한다:

임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태가 필요하다:

강제적 강간의 결과로 임신을 했다:

근친의 결과로 임신을 했다:

기타 사유 (명기할 것):

환자에게 임신 사유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16. 낙태 비용 지불 방법 (하나를 표기할 것):

개인 보험:

공공 의료 보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Medicaid):

기타 (명기할 것):

17. 개인 보험의 경우에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를 표기할 것):

진료별 보험 회사:

관리 의료 회사:

기타 (명기할 것):

18. 보험금 지원 받은 총액:

19. 보험금 지원 시기

낙태 이전:

낙태 시:

기타 (명기할 것):

20. 해당 의료 전문분야:

낙태 시술 시 의사가 병원 특권을 지닌 병원

은?

21. 낙태 시술 전, 중 또는 후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했는가?

이전에:

질, 복부, 또는 둘 다:

후에:

질, 복부, 또는 둘 다:

초음파 검사가 실시되었다면, 초음파 검사로 검진된 낙태 시 임신 나이는 어떠한가?

해당 양식에 초음파 검사 사본 또는 스크린샷을 첨부하고, 해당 날짜와 임부의 이름을 표기하십시오. 해당 초음파 검사 정보는 공개 자료가 아니며 HIPAA 규정에 따라서 기밀성을 유지한다.

21A. 낙태 이전에 초음파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유가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인한 즉각 낙태의 경우인가?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임부의 생명의 위협:

임신의 지속이 상당한 정도의 또한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주요한 신체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

기타 사유:

22. 초음파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이는 누구인가?

낙태 시술 의사:

낙태 시술 의사 외의 의사:

기타 (명기할 것):

23. 해당 양식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임부에게 통지하였는가?

a. 그렇다면, 통지 방법을 고르시오:

직접:

전화:

b. 통지를 한 이는 누구인가:

조회하는 의사:

조회하는 의사의 대리인:

낙태 시술 의사:

낙태 시술 의사의 대리인:

28. 해당 낙태가 오클라호마 주의 피고용자 또는 오클라호마 주의 정부 기관 또는 정치 하위 기관의 피고용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29. 해당 낙태가 공공 기관, 공공 시설, 공공 장비 또는 해당 주나 주의 정부 기관 또는 정치 하위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30. 28 또는 29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다음에 답하십시오:

a. 임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했는가?

그렇다면, 생명을 위협한 상황에 대해 명기하십시오

b. 임신이 강제적 강간에 의한 결과인가?

그렇다면, 해당 강간이 보고된 법 집행 기관을 나열하십시오:

보고된 날짜:

c. 임신이 미성년자 임부를 대상으로 한 근친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해당 사건이 보고된 법 집행 기관을 나열하십시오:

보고된 날짜:

미성년자의 경우 작성

31. 낙태 시 미성년자의 나이:

32. 미성년자의 부모가 낙태 시술 전 통지를 받았는가?

a.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되었는가?

직접:

편지:

b. 그렇다면, 해당 양식을 보고하는 의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통지 이후에 해당 미성년자가 낙태 시술을 결정하였는가?

33.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서면 동의를 수령했

는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수령했는가?

직접:

기타 (명기할 것):

34. 여하한 통지나 동의도 없었다면, 어떠한 경우인지 고르시오:

해당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독립(eman-
cipation)한 경우:

미성년자의 생명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낙태
가 필수인 경우:

법률에 정한 바 “의료상 응급상황”의 경우:

부모의 통지 또는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35. “의료상 응급상황”으로 인해 여하한 통지나
동의를 없었던 경우라면 다음을 고르시오:

부모에게 차후에 통지되었다 (경과한 시한을
명기하시오):

법원의 명령에 의해 통지가 면제되었다:

36. 부모의 통지 또는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다음을 고르시
오:

법원의 결정에 의한 바, 해당 미성년자가 충
분히 성숙하여 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한 바, 낙태가 해당 미성년
자에게 최고의 이익(best interest)이 되는
경우:

37. 임신 시 태아의 생부의 나이:

38. 법령에 의한 바 임신 시 생모와 생부의 나이

가 강간 또는 폭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 사
건이 적절한 정부 기관에 보고되었는가?

39. 낙태 이후에 생모의 몸 밖으로 태아의 잔여
물이 다 배출되었는가?

잔여물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검사에 의하면
해당 태아의 성은 어떻게 되는가?

해당 태아의 성은 낙태 전에 결정되었는가?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검진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검진되었는가?

낙태 전에 태아의 성이 결정되었다면, 생모
는 해당 태아의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
는가?

40. 낙태 시술법이 아닌 약물 낙태가 실시된 경
우, 약물이 처음 투입될 시 낙태 시술 의사가 함
께 현장에 있었는가?

41. 난자의 수정 후 8주 이상인 경우, 낙태 시술
의 일부 또는 전부 이전에 임신한 임부에게 태아
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는가?

생모에게 심장소리를 들을 것인지 물었는가?

도플러(Doppler) 태아 심장 감지기를 사용
하여 생모에게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려주었
는가?

여하한 질문에 대해 부적격 응답이 기록된 경
우, 해당 낙태는 어떻게 법률에 정한 바에 따
라 진행되었는가?

날짜:

(의사 성명)

(의사 면허/허가 번호)

경고: ...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한 공공 기록에 여하한 여성의 성명, 주소, 출생지, 거주지, 또는 여하
한 환자의 신상을 밝히는 여하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 보건복지부는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한
공공 기록에 여하한 여성 또는 해당 낙태 시술 의사의 신상을 밝히는 여하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

낙태로 인한 여하한 합병증은 “낙태합병증보고양식”에 따라서, 낙태 후 합병증이 나타난 즉시 실행 가
능한 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되, 해당 증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2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미국 Alabama state 법규 규정 § 26-21-3에 의하면, (a)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를 수술하는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동의서는 법적 후견인 혹은 부모 중 어느 한 쪽인 경우만 허용한다. 만일 수술 의사가 적절한 시기 즉 낙태 시술 전 이 동의서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 보건 당국에 서류 미 제출 사실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b)예외 조항으로는 임신중절 수술을 계획하는 미성년자가 임신으로 인한 의료 응급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 부모 동의서 제출은 면제될 수 있으나, 즉각적인 중절 수술 후 90일 이내에는, 동의서가 해당 보건 당국으로 필히 제출되어야만 한다.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법정 우회 절차를 포함하지 않은 법규들은 대개 유효하지 않으며, 이론상 하급 법원 판사들은 항상 낙태 수술을 계획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고 공표함으로써 그들의 낙태

결정권을 강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Judicial 306의 남용이 발생할 경우, 위의 법적 권한은 부모의 동의 없이 시술을 시도하려는 일부 미성년자들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오용과 과용은 헌법적 의무에 충실히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소심 법원 판사들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4-3 미성년자 낙태 수술에 관한 배우자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성년자의 낙태수술에 관한 배우자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미국 Pa. C.S. § 3209에 따르면, (a)결혼 관계의 순결함과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결혼 생활 안에서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소망을 보호 존중하기 위해, 하위 조항 (b), (c)를 제외하고는 어떤 의사도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태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 배우자 동의서를 기반으로 낙태가 시행될 수 있는데, 이 동의서에는 그녀가 낙태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배우자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적 공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거짓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5. 정부 및 사회에 관한 조항

5-1.

낙태 시 정부 자금 지원 금지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은 미국 보건부 세출 예산안의 부칙으로서, 매년 법안 제출 및 의결이 되어야 한다. 본 수정안은 지난 약 40년간 여러 형태로 의결되었다. 현재는 낙태에 국가 세금의 사용을 금지하되, 강간, 근친, 임신부의 건강의 문제의 경우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edicaid)가 낙태를 지원할 것을 예외로 둔다. 다음의 하이드 수정안은 2013년도 수정안으로서, 다른 연도의 하이드 수정안들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도 하이드 수정안
(Hyde Amendment)¹

4장 - 낙태 시 연방 자금 지원 금지 301조. 낙태 자금 지원 금지

(a) 일반 - 연방법에 의해 승인 또는 책정된 자금, 그리고 연방법에 의해 승인 또는 책정된 자금이 구성하는 신탁 자금은, 여하한 낙

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b) 건강 보장 혜택 - 연방법에 의해 승인 또는 책정된 자금, 그리고 연방법에 의해 승인 또는 책정된 자금이 구성하는 신탁 자금은, 낙태를 포함하는 건강 보장 혜택에 사용되지 않는다.

302조. 강간, 근친, 또는 임신부의 생명 보존의 경우 낙태에 대한 처리

301조의 제한 사항들은 다음의 경우의 낙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임신이 강간 또는 근친의 결과인 경우
- (2) 여성이, 임신 자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상태를 포함한 신체적 질환, 신체적 부상, 또는 신체적 질병을 겪어 낙태를 실행하지 않을 시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이 의사에 의해 검증된 경우.

하이드 수정안의 찬반 논란

하이드 수정안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낙태를 반대하는 납세자들의 양심을 거론한다. 반대로, 본 수정안의 반대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을 차별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이드 수정안을 둘러싼 주된 논쟁은 “도덕성”과 “납세자의 돈이 낙태에 사용되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하이드 수정안의 찬성자들은 본 수정안이,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 프

¹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142>

로라이프(Pro-Life) 미국인들의 “종교적 자유와 양심”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하이드 수정안의 지지자들의 또 다른 주장은, 이 수정안이 낙태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돈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 자체는 낙태를 막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하이드 수정안을 반대하는 측은, “이 수정안이 저소득층 여성을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낙태를 하는 여성의 42%가 “가난한” 상황이다.² 하이드 수정안으로 인해, 10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Medicaid)의 대상인 여성 중 18%에서 33%는 자금 지원이 없는 주에서 살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한다.³

하이드 수정안의 현황⁴

34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의 기준을 따라서, 생명이 위태롭거나 강간 및 근친의 경우에만 세금을 사용한 낙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4개 주는 태아의 장애로 인한 낙태도 주 세금으로 지원한다. 또 다른 4개 주는 생모의 신체 건강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낙태에 주 세금을 지원한다.

2 <https://www.guttmacher.org/report/characteristics-us-abortion-patients-2008>

3 <https://billmoyers.com/content/five-facts-you-should-know-about-the-hyde-amendment/>

4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funding-abortion-under-medicaid>

1개 주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낙태를 지원한다. (사우스 다코타)

나머지 15개 주는 의료상 필요한 낙태라면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edicaid)가 적용된다(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몬타나,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이 중 10개 주는 지원금 적용을 위해서는 법원 명령을 의무로 두고 있다.

하이드 수정안 헌법 재판

(Harris v. McRae, 448 U.S. 297 (1980))

1976년 하이드 수정안이 의결되고, 이 수정안은 해리스 대 맥레(Harris v. McRae)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데, 198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이 법원은 본 수정안을 합헌으로 판결한다. 그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edicaid)를 시행하는 주는, 하이드 수정안에 의거한 바 연방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의료상 필요한 낙태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

(2) 하이드 수정안의 자금 지원 제한은 미국 연방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이드 수정안의 자금 지원 제한은,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음을 판시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판결에 따른 적법 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는다. 여성의 선택의 자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지 않는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낙태에 대한 긍정적 권리를 다루지 않으며, 그러므로 정부는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없다.

통지를 요구하는 법령을 제정한 주 정부일 경우, 동의서 보고 의무가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태아의 생존력이 존재하기 전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주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도 유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5-2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정부의 사전 허가제 의무화

미성년자의 임신중절 수술 전에, 정부는 그 결정이 충분히 배우자와 부모에게 사전 통지 및 동의가 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통제를 해야만 한다. 주 정부가 정식 면허를 소지한 의사에게만 낙태술을 의뢰한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가진 보조인에게 수술을 허락한 경우와는 다르며 임신한 여성의 동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주정부가 오로지 정식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만이 낙태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령들을 제정하기를 주장한다. 그럼에도, 주정부가 병원 내 승인된 위원들에게 실제 낙태 수술을 허락한 경우에, 법원은 이러한 법령 조항들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낙태동의서의 정부보고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낙태 이전에 배우자 동의서 혹은

5-3

낙태에 관한 민사소송

1997년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후 최대 10년간 태아 피해 등 낙태 관련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낙태 수술 집도 의사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Patient's Compensation Fund' (환자 보상 기금)이 낙태 관련 보험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루이지애나 주는 1997년에 조항 82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낙태 수술을 집도하는 이는, 낙태로 인해 태아의 산모에게 발생되거나 촉발된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상"은 "태아에게 입은 부상 또는 피해"도 포함하여 정의한다. 또한 이 법은 작성된 동의서가 "이 행동의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모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부상이나 손실의 유형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 피해의 회복을 감소시킨다"라고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